

활기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奉誠
意仕實

漁港消息

발행경 편집인 孫井植 特殊 韓國漁港協會
인쇄인 金在克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05-9
ISSN 1227-7053 TEL. 568-6651~2
등록일: 1988년2월19일 568-5595~6
FAX. 568-6653

21세기형 어항중심 종합개발 촉구 “어항 개발·정비에 집중 투자하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서 지적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가 10월7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2백해리 제한수역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규모의 어업으로 전환하고 첨단과학에 의한 양식어업의 발전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선진 어항어촌을 앞당기기 위

해서는 항간거리 단축과 어항예산의 증대를 강조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 2면에 상보> 또 21세기에 부응하는 어항중심권 종합개발을 추진하여 어항이 지역발전의 거점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하며, 어항 건설현장의 인력부족과 관련, 어항개발을 위한 설계·시행·감독 등을 공공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어항의 관리까지 책임지는 '어항관리공사' 같은 공공단체를 설립하는 방안과 해양수산부 내에 '어항국'을 설치, 인원을 확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와함께 민자를 유치하여 서라도 어촌의 부흥과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어항개발과 정비는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회가 일본 수산업의 새로운 전개를 기약하는 장이 될 것 을 기대하며 △제9차 어항정비장기계획에 의거하여 어항

정비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것 △제6차 해안사업 5개년계획에 의거하여 해안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것 △1998년도 어항관계예산에 대하여는 요구액 및 '생활관련 등 중점화조치범위' 요망액과 '물류효율화 경제구조개혁특별범위' 요망액을 전액 확보할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안과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를 거꾸로 한 번 해석해 본다면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근해를 장악할 수 있는 내부적인 사업, 다시말해 각종 어항정비사업을 어느 정도 끝마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과실을 얻기 위해 나서야 될 때라고 판단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관국인데 우리나라는 과연 수산업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원론적인 문제를 놓고 회의론이 일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의원들의 말처럼 2백해리 시대를 맞아 제한수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규모의 어업으로 시도해야 하며, 이런 선진어항어촌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항간거리의 단축과 어항예산의 증대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이와함께 21세기에 부응하는 어항중심권 종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항관련 공공단체를 통해서, 그게 어려우면 해양수산부내에 '어항국'을 설치, 집중 연구 개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가 재원이 부족하다면 어항법에 명시된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어촌의 부흥과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어항개발과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문제는 관계당국이 이런 의원들의 주장을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솔직히 최근 어수선한 정국을 맞아 우선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어항문제를 몰고 간다면 공허한 말장난만 하고마는 꼴이 된다. 두루뭉수리한 답변보다는 모름지기 사명감과 절박한 의식이 필요하다. 게다가 그 대상이 현재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어업인과 수산업이라면 역동적이면서도 머나먼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의욕을 가진 관계당국을 어항인들은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수십년을 보내온 우리의 어항이고 수산업이다 보니 이제야 말로 진정한 정책을 묵마르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정을 정말 확실히 인식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어항어촌 환경정비사업 확충

日, 제49회 전국어항대회 성료

第49回全国漁港大会



孫井植 회장, 초청 참석

일본 제49회전국어항대회가 10월 15일 일본 미야자키시(宮崎市) 월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사진>

일본 전국어항협회장의 초청으로 전국어항대회에 참석한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이날 중·참의원 농림수산위원장 및 위원, 농림수산성 정부차관, 대일본수산업회장,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 각현 어항협회장, 전국市·町·村 어항관계자, 수산관련단체, 어업인 등 총 3천5백 여명이 집결한 대회장에서 그들이 어항어촌정비사업의 조기실현을 위해 의견을 집결하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과정 등을 참관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및 바다와 친숙한 국민을 위한 여유와 윤택이 있는 공간의 창출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일이 긴요한 과제라고 주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생태계 등 자연환경의 보전 등을 배려하면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어항어촌권의 종합적인 발전을 지지하는 어항을 효과적으로 정비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살기 좋고 활력있는 어항어촌 만들기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희망에 넘치는 미래를 수산업에 맡길 수 있도록 제9차 어항정비장기계획의 가일층 추진을 요구하고, 어항어촌 및 해안의 정비에 관한 제시책의 확충강화를 강력히 기약코자 하는 것이다. 대회 참석자들은 이번 대

우리나라 어업은 지금 새로운 해양질서에 대응한 섬세하고 빈틈없는 확립과 그 종합적인 전개를 초미의 급선무로 하고 있다. 즉, 어획가능량제도의 원활한 운용과 재배어업의 가일층 추진, 어업경영대책의 확립, 어촌에 있어서의 생활환경 개선 및 바다와 친숙한 국민을 위한 여유와 윤택이 있는 공간의 창출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일이 긴요한 과제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생태계 등 자연환경의 보전 등을 배려하면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어항어촌권의 종합적인 발전을 지지하는 어항을 효과적으로 정비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살기 좋고 활력있는 어항어촌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 팽박한 재정사정에 대처하는 재정구조 개혁의 일환으로서 모든 공공사업에 대하여 장기계획의 기간연장 및 1998년도 예산을 97년도 대비 7% 삭감을 결정하였다.

이 때문에 어항어촌의 정비는 전에 없는 냉엄한 국면에 서게되고, 그 전망은 극히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수산물을 가지고 국민에게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본형 생활의 유지를 도모하는 일, 안전하고 밝고 살기 좋은 어촌만들기를 추진해 가는 일, 또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유지관리해 나가는 일은 국민생활의 안정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기약하는데 있어서 불가결한 요건이다. 그리고 수산업의 진흥에 종사하는 자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우리를 어항관계자는 수산업이 수행하는 역할에 크나큰 긍지를 가지고 여기 미야자키(宮崎) 땅에서 회동하여 수산업에 양양한 희망에 넘친 미래를 맡길 수 있도록 제9차 어항정비장기계획의 가일층 추진을 요구하고, 어항어촌 및 해안의 정비에 관한 제시책의 확충강화를 강력히 기약코자 하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강조된 어항개발 방향

지난 10월 7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어항개발에 관한 문제가 거론됐다. 민의를 국회에 전달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너무도 당연한 일이겠지만 어항인들 입장에서는 때늦은 감도 없지않다. 더욱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주장한 내용이 평소 한국어항협회가 기회있을 때마다 부르짖어온 것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는 우리의 어항시정방향도 개선되어야 할 시점에 이른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우선 이날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소규모항이 예산부족으로 어항기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다. 국고지원 확대로 완공위주 개발이 절실하다. (신한국당 김기춘 의원) 99년부터 시작될 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에 어항정비사업이 반영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어항의 일제 정비사업등 어항어촌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신한국당 이강두 의원) 수산부예산 가운데 적어도 40% 이상을 어항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일본이 60% 이상을 투자하는데 우리는 현재 겨우 20% 수준이다. 그래서 항간거리를 단축하고 어항어촌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신한국당 주진우 의원) 어항중심의 종합개발을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설계·감독 등을 공공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민회의 김종배 의원) 어항중심으로 관공래저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와함께 어항투자의 확대와 지정항의 조기완공도 시급한 실정이다. (자민련 한호선 의원) 이상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대체로 우리나라 수산업의 위기국면과 맥을 같이 한다. 최근 일본이 자기들 멋대로 바다에 선을 북북 그어놓고 여기에 멋모르고 들어간 우리 어선을 나포하는 방약무인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들 거꾸로 한 번 해석해 본다면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근해를 장악할 수 있는 내부적인 사업, 다시말해 각종 어항정비사업을 어느 정도 끝마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과실을 얻기 위해 나서야 될 때라고 판단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관국인데 우리나라는 과연 수산업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원론적인 문제를 놓고 회의론이 일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의원들의 말처럼 2백해리 시대를 맞아 제한수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규모의 어업으로 시도해야 하며, 이런 선진어항어촌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항간거리의 단축과 어항예산의 증대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이와함께 21세기에 부응하는 어항중심권 종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항관련 공공단체를 통해서, 그게 어려우면 해양수산부내에 '어항국'을 설치, 집중 연구 개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가 재원이 부족하다면 어항법에 명시된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어촌의 부흥과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어항개발과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문제는 관계당국이 이런 의원들의 주장을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솔직히 최근 어수선한 정국을 맞아 우선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어항문제를 몰고 간다면 공허한 말장난만 하고마는 꼴이 된다. 두루뭉수리한 답변보다는 모름지기 사명감과 절박한 의식이 필요하다. 게다가 그 대상이 현재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어업인과 수산업이라면 역동적이면서도 머나먼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의욕을 가진 관계당국을 어항인들은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수십년을 보내온 우리의 어항이고 수산업이다 보니 이제야 말로 진정한 정책을 묵마르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정을 정말 확실히 인식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어항관련 질의내용 지상중계

김기춘 의원(신한국당)

소규모항 예산부족으로 어항기능 상실 국고지원 확대에 완공위주개발이 절실

현재 소규모어항은 어항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여 지정된 어항만 많지 제대로 개발이 안돼 문제가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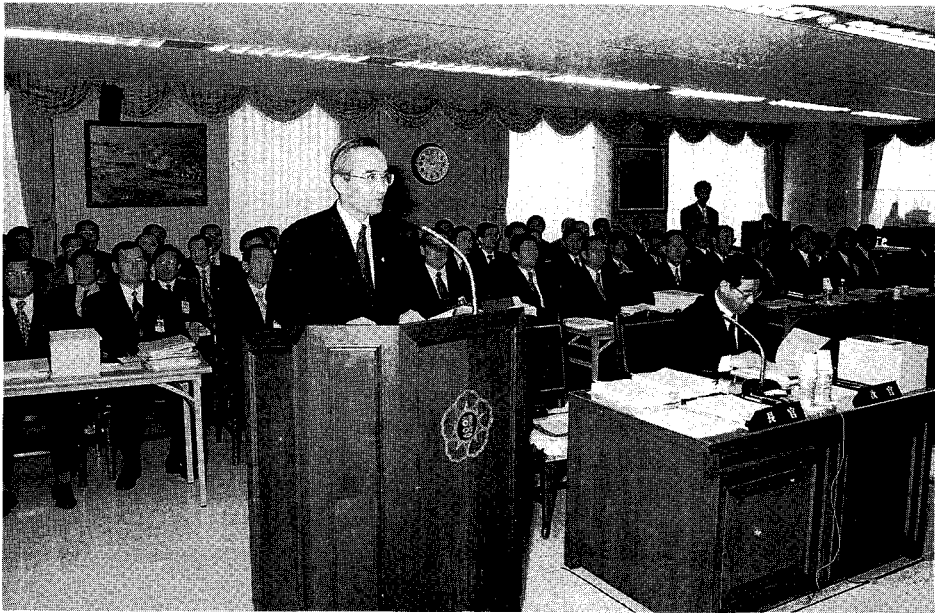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현재 소규모어항의 경우 국고 50%, 지방비 50%의 재정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예산확보가 어려워 사실상 개발을 포기하고 있

는 실정임. 거제시의 경우 소규모어항이 79개에 이르지만 지난 3년 동안 소규모어항사업의 실적은 미미하기 짝이 없음. 지방비와 국비를 합해 95년 7개소에 4억1천만, 96년 3개소에 2억, 그리고 올해 3개소에 1억8천만원이 사업비의 전부임.

이렇게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 매년 4~5개소에 그치는 정도여서 자연침하나 태풍내습 등에 대해서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음. 현재 소

규모어항 시설 중 대다수(80% 이상)가 마을자체 어선조차 접안이 어렵고, 간조시에는 아예 어항기능을 상실해버리는 실정임.

사면이 바다인 경남 거제시는 어촌 자체가 관광자원이지만, 어항개발의 부진으로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치 못하고 있는 바, 장관께서는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단 1개소라도 완공 위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지난 10월 7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 국정감사장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조정제 장관.

김종배 의원(국민회의)

어항중심 종합개발 위한 정책전환 필요 설계·감독등 공공단체 위탁방안 검토를

지난 7월 한달간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1종과 제3종 어항중 19개 어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료를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1·3종 어항현장실태조사 및 어항중심권 종합개발모델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음.

이번 현장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수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어촌을 침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어항의 개발과 발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음. 어항은 어업의 기반이 되는 SOC일뿐만 아니라 어촌지역발전의 중심에 있기에, 인근 자원과 연계해서 개발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봄.

이 보고서는 어항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해당 어항이 지역발전의 거점지로 육성할 수 있는 발전잠재력이 있는가 하는 점, 그리고 어항개발의 모델은 어떠한가 하는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뤘음. 그러나 질의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보고서와 관련된 상세한 질의보다는 해양수산부가 이 보고서 내용

을 정밀 검토해서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함.

- 앞으로 어항개발은 수산업 목적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 예를 들면, 휴양과 관광, 해양성 레저, 연관사업의 발전 등 여러 분야를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개발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봄. 이제 어항을 보는 시각이 변하고 있으며, 해양 친수활동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고 있음. 이 기회에 21세기에 부응하는 어항중심권 종합개발 구상을 추진하여 어항이 중심이 되어 지역발전의 거점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이와 관련해서, 현재 개별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항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그리고 어촌관광개발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동시에 연계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일선 현장은 감독관들의 인원부족으로 인해 공사감독이 부실하고 각종 법규준수를 지도감독할 여력이 없음.

현재 감독관 1인당 2~3개 건설현장을 감독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어항관리를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번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어항관리가 매우 부실함.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회는 어항의 설계, 시행, 감독 등을 공공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어항의 관리까지 책임지며 지역거점 어항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컨대 '어항관리공사'와 같은 공공단체를 설립하는 방안과, 해양수산부내 기구개편을 통해 일본처럼 어항국을 설치, 인원을 확충하여 전담시키는 방안(여기에 어항건설과, 어항관리과 포함)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 어항지정 기준과 관련, 현행 어항법은 어항의 지정 기준을 어항간 거리, 어선 수, 어획량에 두고 있는데, 현장조사한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데도 1·3종으로 지정된 경우도 있었음. 물론 이것은 어항개발의 필요성, 발전성, 연안어선의 보호 등을 위한 사유가 있기 때문임. 그런데, 어항중심권 중

이 크고 잠재력이 있다해도 1·3종 지정어항이 되지 못함으로써, 거점어항으로 발돋움하는데 제약이 따를 것으로 봄. 따라서, 어항의 지정 기준을 어항중심 종합개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구상은 있는지.

합개발을 추진할 경우, 현행 어항법상 지정기준은 미달되더라도, 지역발전의 가능성

이강두 의원(신한국당)

2단계 농발계획에 어항정비사업 반영을 어항 일제정비사업등 어항어촌 집중투자

현재 수산업의 기반시설이 미약하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99년부터 시작될 제3단계 농어촌발전계획에 어항정비사업을 반영하여 어항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봄.

2백해리 이내의 수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규모의 어업으로 전환하고 유전 생명공학 등 첨단과학에 의한 양식어업의 발전을 통하여 바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신해양시대의 한정된 수역에 적합한 자본인력을

주진우 의원(신한국당)

투입하여 수산자원의 유지관리를 새롭게 도모해야 함.

국토의 합리적인 보존, 국토의 균형개발, 지역경제 및 지역산업의 활성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어업의 기반시설인 어항어촌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므로, 전국의 어항에 대한 일제 정비사업부터 추진해야 함. 단순히 방파제 축조에만 그치지 말고 아름다운 해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봄.

어항개발에 대한 농특회계 지원이 내년인 98년에 끝나므로, 만약 제2단계 계획에

서 어항분야에 대한 사업이 제외된다면 천재일우 호기를 놓치고 마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일본이 우리의 수산업 영역을 조금씩 침범해 오고 있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임. 따라서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운 곳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 99년부터 추진될 제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에 어항정비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한 장관 답변을 바람.

수산업의 40% 이상을 어항예산으로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어항어촌개발해야

21세기 선진 어항어촌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어항어촌이 어촌지역사회의 핵이 될 수 있도록 관광 친수성 레저 단지나 도·어간의 교류를 함으로써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활력있는 어항어촌개발이 필요함. 이로 인한 부대사업이 크게 늘어 난다면, 젊은 인력을 다시 유인하게 됨으로써 이중효과도 기대됨.

지난 7월1일부터 수산물수입이 전면 개방되었으나, 아직 이렇다할 대책이 없는 실

한호선 의원(자민련)

어항중심으로 관광레저산업 발전시켜야 어항투자 확대 지정항 조기완공도 시급

수산물의 수입개방, 수산자원의 감소, 적조, 해양오염 피해 등으로 어업생산만을 가지고는 어가 소득의 획기적인 증대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천혜의 자연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함.

귀 부가 출범 1주년에 즈음한 21세기 해양수산비전을 현실화 하자면 우선 어항을 중심으로한 해양문화 휴양어촌, 해양레포츠 단지, 해양수산물 관광도시를 개발하여야 할 것인데 어항개발예산을 보면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고 보여짐.

이중에서도 어항법에 의한 1·2·3종으로 구분되어 1·3종 89개 어항은 해양수산부가, 2종 3백26개 어항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연간 1천5백억원 내지 1천6백억원의 투자로 어항으로 기능을 다 하도록 개발 정비하자면 부지하세월일 것이라고 생각함.

더욱이 강원지역을 살펴보면 12개의 1·3종 어항중에 금년말을 기준으로 7개항이 미완

정임. 우리 수산업도 경쟁력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현대적 수산물 유통기지를 곳곳에 설치하여 물류비용을 최소화 시켜야 할 것임.

현재 우리나라 연안의 지정항은 415개이나, 항간 평균거리가 28km나 됨. 이는 일본의 항간거리 11km의 무려 2.5배임. 이런 항간거리는 기상악화시 어선의 안전 대피를 어렵게 만들고, 어업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오게 됨. 따라서 소규모 또는 2종 어항을 승격 지정하여 항간

거리를 좁히고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항어촌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개발되어야 함. 일본의 경우 어항어촌개발을 위해 수산업의 60%이상을 투자하는데 비해, 우리는 20% 수준임. 21C에 대비하는 어항어촌 건설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어항예산이 확보돼야하며, 최소한 수산업의 40%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고 봄. 장관의 견해는.

공 상태이나 5개항(거진, 아야진, 남해, 장호, 임원)은 금년에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한 상태이고 완공된 5개항 역시 방파제, 물양장 등의 기본시설만 되었을뿐 연계 시설이 미비된 상태이며 2종 어항은 16개소이나 예산부족으로 6개항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고 지금과 같은 예산규모라면 16개항 개발에 27년이 걸린다는 강원도의 판단임.

따라서 궁촌, 동산 등 4개항을 1·3종 어항으로 승격하여 줄 것을 갈망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같은 예산사정으로 기하 1·3종 어항으로 지정되어 있는 어항도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터에 승격을 한들 소용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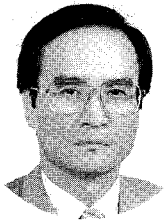
필요하다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어항법 개정안에도 반영되어 있는 민자를 유치하여서라도 어촌의 부흥과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어항개발과 정비는 서둘러야 하겠음.

장관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임. 따라서 미완공 또는 정비되지 않은 거진, 아야진, 남해, 장호, 임원항의 조속한 완공을 촉구하면서, 이제 과거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이 각각 어항법과 항만법에 의하여 관리해오던 항구 가운데 일부 어항의 경우 비교적 예산이 풍부한 항만법에 의한 연안항으로 전환하려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제는 해양수산부라는 한 기관에서 관장하게 되었으므로 27개 무역항에 비하여 영세항이라 할 수 있는 18개 연안항(영평도, 대천, 비인, 대흑산도, 흥도, 북동신항, 나로도, 거문도, 한림, 화순, 성산도, 애월, 부산남, 구룡포, 월포, 후포, 울릉, 주문진)은 어선의 이용빈도가 많은 항구이므로, 95년 12월 거진, 임원항이 연안항에서 어항으로 전환된 것과 같이 지역민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어항으로 전환하여 수산업의 연계시설이 용이하게 이루어져 어가 소득원 개발에 보탬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견임. 이렇게 된다면 예산도 함께 따라가야 할 것임. 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함.

동

정

제1회 어업인후계자 대회서 우수후계자 표창



조정제 해양수산부장관

▲조정제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10일 전남 여수시 광림동 전남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회 어업인후계자대회에 참석 우수후계자들을 표창.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10월6일 신한국당 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앙위 분과위원장 및 간사 연석회의에 참석, 8일에는 공약개발위원회 제6차회의에 참석, 9,10 양일간은 천안 중앙연수원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임원연수에 참석, 13일에는 여의도 신한국당사에서 개최된 공약개발위원회 제7차회의에 참석, 15일에는 일본 전국어항협회장 초청으로 일본 미야자키(宮崎)시 월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9회 전국어항대회에 참석, 대회 참관에 이어 메이즈(目井津)어항을 시

찰, 이어앞서 14일에는 대회 전야 리셉션에서 한·일 양국간 어항관련 기술교류 협력 증진에 관해 논의, 18일에는 부산남부민동 남항방파제에서 열린 97년도 해양보전실천결의대회 및 가을철바다대청소 행사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10월8일 캐나다 베이비스 수산해양부 태평양지역 해양연구소장의 예방을 받고 양국수산교류 등 상호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

▲안성봉 한국어선협회장은 10월10일 제1회 어업인후계자대회에 참석, 이어 여수지방부회를 순시, 어선일제정비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과 초일류협회 재창출을 위해 토론.

▲최상욱 남화도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0월1일 광주 서석중학교 교육시범학교 운영보고회에 참석, 이어 순천 낙안읍성 민속마을에서 열린 남도음식축제 개막식에 참석, 8일에는 창원에서 개최된 제78회 전국체전 개막식에 참석, 9일에는 담양군민회관에서 열린 551돌 한글날 기념식에 참석, 17일에는 유네스

코 광주전남협회 정기이사회에 참석, 20일에는 문화의날 기념 제9회 전남향토문화상 시상식에 참석.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10월9일 전국체전 전남·광주시 본부를 방문 선수단을 격려하고 성금을 기탁, 13일에는 한국신문협회 제35차 정기총회에 참석, 25일에는 송원학원 강당에서 청소년선도 문예백일장을 개최.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0월2일 한·일 친선협회 주관 주한 일본대사 송별만찬에 참석, 7일에는 세계경제연구원 세미나에 참석, 16일에는 신한국당 재정위원 오찬에 참석, 21일에는 전경련 주관 한·영 재계 간담회에 참석, 23일에는 한국정치발전연구회 조찬세미나에 참석.

▲황금추 동광건설주식회사 사장은 10월8일 전국체전에 참석하고 펜싱경기 관계자들을 격려.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0월6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21세기 전남비전위원회 창립회의에 참석, 9일에는 97년도 전국체전과 관련 전남

·광주시 체육회에 각 1백만원의 성금을 기탁, 10,11 양일은 광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한 관동지역 산업시찰에 참석, 17일에는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참석.

▲정윤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0월 9,10 양일간 신한국당 천안중앙연수원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임원연수에 참석, 16일에는 진도 공사현장을 방문.

▲장정언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0월4일 제주도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한라문화제에 참석, 6일에는 탐동 공연장에서 열린 아·태 영화제에 참석, 23일에는 하이아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세미나에 참석.

▲송재성 주식회사성호종합건설 회장은 10월 5,6 양일간 여수 공사현장을 방문.

전무이사)의 장남 민수 군이 10월16일 삼성동 공향터미널 3층에서 화축을 밝혔다.

▲김재우씨(동화건설주식회사 사장)의 장녀 은정 양이 10월15일 호텔 소피텔엠버서더에서 화축을 밝혔다.

▲피경만씨(주식회사금촌건설 부사장)의 장녀 성재 양이 10월19일 영등포 목화에 식당에서 화축을 밝혔다.

변 경

▲공종덕씨(현대지리정보주식회사 사장)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1동 905번지 햇빛마을 2104-1303호로 자택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 (0344) 938-4637.

▲손광식씨(주식회사건일엔지니어링 이사)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2동 38-3번지 201호로 자택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 (02) 514-5222.

▲김익중씨는 최근 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전무이사)으로 근무처를 옮겼다. 전화번호: (02) 562-3777.

인 사

▲해양수산부 인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김성수 △해양정책실 해양심외관 김하진 <10월9일자> □부이사관 승진 △감사담당 주재환<10월11일자> □전보 △해운정책과장 양병관 □직위승진 △법무담당관 문해남 △국립수산진흥원 남해수산연구소 기획과장 이장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김성호 <10월15일자>

당 선

▲죽변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오계석

▲동해구기저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용창

▲축산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복이

▲전남정치망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성남

신 간 인 내

▲'환경창조를 지향하는 21세기 해양개발' 저자-곤도 다케오, 감수-안희도, 역자-이중우 이명권 신승호, 출판사-기문당, 정가-15,000원.

회 족

▲박기철씨(전 한국어선협회

죽변항등 어항정비 이용어선 안전위해

해양수산부는 '제1종어항인 사천진·죽변·감포항에 대한 어항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사천진항과 죽변항은 항내 및 항입구에 매몰이 극심하여 어선이용에 불편과 위험이 따르고 있으며, 감포항은 항내의 소란으로 어선접안 및 안전정박에 지장이 커 그동안 대책수립을 위한 용역조사를 실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주요 정비내용에 의하면 사천진항은 해저토사 이동방지를 위한 북방파제의 연장배치와 하구에서의 토사유입 방지를 위해 중간방사제를 연장할 계획이며, 죽변항은 연안유속이 강한 북방파제 중앙부 외측에 이체를 설치, 표사이동을 줄이고, 해저지질 이동과 항내 유입표사를 막기 위해 방파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감포항에 대해서는 북방파제 연장과 도제를 신설하여 항내정온도를 확보, 이용선박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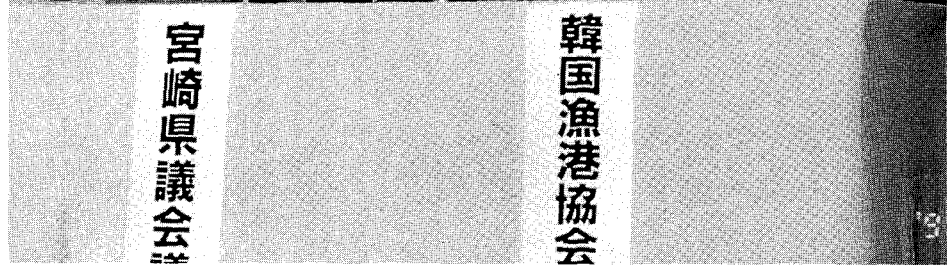
이와함께 수산항에 대해서는 항내매몰, 해안침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계획을 변경하고, 수산항과 사천진항의 어항구역을 확대 변경할 계획이다.

다가능 어항을 개발해야

'2천년대의 제주...' 심포지엄

제주대학교는 최근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소재 연구소에서 '2천년대의 제주수산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9회 해양과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남형 제주대교수는 '2천년대를 대비한 제주도 어항 개발의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어항은 수산업 외에 유통 가공 및 어촌관광부까지 개발잠재력을 가진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삼아 다가능 어항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 10월 15일 일본 미야자키 시에서 개최된 제49회 전국어항대회에 참석, 대회를 참관하고 있는 손정식 회장.<앞줄 오른쪽>

先 進 東 亞 技 術 報 國

주요사업영역

- 국토개발부문** 도시계획, 조경, 교통, 에너지사용계획, 측량
- 건설사업부문**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건축구조, 항만 및 해안,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발송배진
- 종합책임감리사업부문** 토목책임감리, 건축책임감리
- 환경부문** 엔지니어링,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환경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株)東亞技術公社

대표이사 김 영 삼

DONG-A ENGINEERING Co.,Ltd.

전남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291-3 전화(0612)374-1320



환절기 건강관리

갑작스런 온도변화 뇌졸중 유발
적절한 실내습도 청결유지해야

날씨가 추워질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은 물론 감기이다. 감기란 기온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여 일종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부기도의 감염증으로서 전염되는 병이다. 전파방법은 대개 대인접촉에 의해 전파되기 때문에 한 가족에 집단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전파시기는 증상이 나타나는 수시간 전부터 증상이 나타난 지 1~2일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다. 임상증상으로는 가래는 콧물이나 비강점막에서부터 기침과 두통이 있으며, 고열과 전신통이 생기며 침 삼키기가 곤란해지는 인두염, 목이 쉬는 후두염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증상들은 대개의 경우 특별한 치료가 없이도 스스로 회복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대증요법에 준하여, 감기 예방을 하려면 적절한 영양과 적당한 운동,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개인위생을 청결히 하고 실내 습도를 알맞게 유지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또 기온이 떨어질 때 심혈관 질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이 있는 사람이 실내의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추운 바깥으로 나가면, 갑작스런 온도변화 때문에 말초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액의 흐름에 방해가 생겨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급성질환을 일으키게 된다. 몸이 갑자기

추위에 노출되면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항상 추위에 대한 주의를 일상생활 속에 곁들여야 한다. 즉 갑자기 찬바람을 쐬지 말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방한을 할 것, 찬물로 세수를 하지 말 것, 염분 섭취를 최대한 제한할 것 등이며 또한 평소부터 운동 건보할 등으로 추위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두는 것이 중요하다.

겨울철의 피부질환을 살펴보면 날씨가 춥고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특히 중년이후의 사람들은 팔 다리가 거칠어지고 작은 발진이 돋으면서 몹시 가려운 건성습진이 생기기 쉽다. 아토피성 피부병의 어린이는 날씨가 추워지면 더 악화된다. 바깥과 실내의 온도차가 심할 때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한랭성 두드러기가 생긴다. 한랭성 두드러기는 아침 저녁에 찬 바람을 쐬거나 찬물에 세수를 하면 일반 두드러기가 생기는 것이다.

겨울철 피부병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추운 바깥에서는 반드시 장갑이나 방한화를 신고, 건선 피부인 사람은 면으로 된 옷을 착용하는 게 좋다.

추워지는 요즘에는 특히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환경변화에 적응하도록 주의하고 질병이 발생하면 담당 가정의 즉각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한 환절기 건강관리법이라 할 수 있다.

2.2.2 표준적인 시공순서

펌프준설의 표준적인 시공순서를 그림 2.2.2에 도시한다. 육상받침틀 공, 여수도공 및 매립관리공 등 육상에서의 작업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14.2 매립공 참조).

2.2.3 시공방법

(1) 규격의 결정

① 펌프준설선의 규격과 형식

펌프준설선의 규격은 준설깊이·토질·파랑 등의 자연조건, 작업능력·공기·여수도 능력 등의 시공조건과 조달의 용이성 등으로 규격과 형식(일반형, 조립형)이 결정된다.

펌프준설선의 규격에는 표 2.2.2, 표 2.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준설깊이, 준설폭 및 준설토질에 의한 적용범위가 있으므로 이 표와 배송거리나 파랑 등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규격을 결정한다.

표 2.2.2 펌프준설선의 준설깊이와 준설폭의 참고치

규격	준설깊이	준설폭
D 200	1.5~5.0m	15~20m
D 250 E 200	1.5~6.0	18~25
E 250	2.0~6.0	18~25
D 420 E 350	2.5~8.0	20~30
D 600 E 500	2.5~10.0	25~40
E 750	3.0~12.0	30~50
D1350 E1000	3.0~15.0	35~60
D4000	4.0~22.0	80~100
D8000	5.5~30.0	100~120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12]

第2章 浚渫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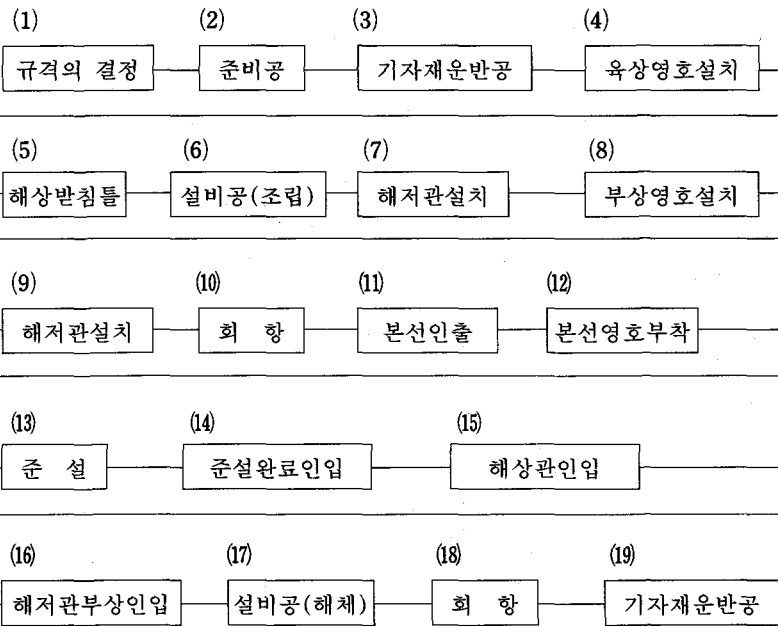


그림 2.2.2 표준적인 시공순서

표 2.2.3 펌프준설선의 토질별 적용범위의 참고치

분류	토질		적용범위		
	상태	N치	소형펌프선		
점성토	연니	0~2	D200	E200~350 D250~D420	
	연니	2~5			
	연질	5~10			
	중질	10~20			
	경질	20~30			
사질토	최경질	30~40		E500~1000 D600~1350	
		40~50			
	연질	0~5			D4000~8000
	연질	5~10			
	중질	10~20			
경질	20~30				
최경질	30~40				

(주) D: 디젤펌프선, E: 전동펌프선, 수치는 규격호칭마력을 표시한다.

공증제도

1. 공증의 의의

공증은 우리의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을 증명해 주는 제도로서, 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다.

2. 공증기관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또는 임명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곳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검찰청의 지청에서 공증을 할 수 있다

3. 공증의 필요성

- 강력한 증거 확보 및 분쟁의 사전 방지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효과마저 생긴다.
- 신속한 강제집행 가능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

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4. 공증의 종류

-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효과만 있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

공증제도 내용증명 우편제도

재판절차 거치지 않고 권리를 실행

-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 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받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사서증서 인증의 특별한 형태로서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 확정일자자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확정일자자는 일반 공증사무소외에 법원에서도 받을 수 있다.

5. 공증시 준비사항

- 공증을 촉탁하려 가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

분증명서와 인장을 지참해야 한다. (법인이 촉탁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도 지참)

내용증명 우편제도

1. 내용증명의 의의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 우편제도이다.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고 있다.

2. 작성요령

- 먼저 A4용지(210×297mm)에 한쪽면 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 이때 작성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서라고 하는데 내용증명서는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증명서는 취급하지 아니한다.
- 내용증명서 작성시 문자나 기

호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와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 수를 난 외의 빈자리나 끝부분 빈곳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이때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그리고 내용증명서의 서두나 끝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를 확실하게 나타내야 한다.

3. 발송절차

- 내용증명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원본과 원본을 복사한 등본(내용증명서의 매수가 2매 이상일 경우에는 합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으로 각각 계인) 2부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한다. 만약 발송인이 내용증명서의 성실상 원본을 보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복사한 등본 3부를 제출하여도 된다.
- 내용증명서 원본과 복사본 등본 2통에 대하여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나면 원본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수취인에게 보낼 원본은 내용증명서에 기록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 봉투에 넣고 우체국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이를 봉합하여 등기 접수하면 된다.

생활정보

생활정보